



창의, 도전, 봉사

제24-호

가 정 통 신 문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94-9

TEL.508-8260 FAX.508-8261

<http://ijss.icehs.kr>

【2024학년도 1학기 1회고사 시간표 및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

항상 본교 교육 발전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2024학년도 1학기 1회고사 시간표 및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를 드립니다.

1. 고사 시간표

실시일	교시	시간	1학년(9과목)	2학년(7과목)	3학년(6과목)
4월 24일 (수요일)	1	08 : 40 (예비령) 08 : 45 (준비령) 08 : 50 ~ 09 : 40	통합과학(09)	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학습
	2	09 : 50 (예비령) 09 : 55 (준비령) 10 : 00 ~ 10 : 50	영어(02)	영어 I (02)	자기주도학습
	3	11 : 00 (예비령) 11 : 05 (준비령) 11 : 10 ~ 12 : 20 (70분)	수학(03)	심화 수학 II (03)	고급 수학 II (03)
4월 25일 (목요일)	1	08 : 40 (예비령) 08 : 45 (준비령) 08 : 50 ~ 09 : 40	통합사회(08)	한국사(08)	자기주도학습
	2	09 : 50 (예비령) 09 : 55 (준비령) 10 : 00 ~ 10 : 50	생명과학 I (06)	고급 생명과학(06)	자기주도학습
	3	11 : 00 (예비령) 11 : 05 (준비령) 11 : 10 ~ 12 : 00	화학 II (05)	고급 화학(05)	영어 II (02)
4월 26일 (금요일)	1	08 : 40 (예비령) 08 : 45 (준비령) 08 : 50 ~ 09 : 40 (1, 2학년) 08:50~10:00(70분) (3학년)	국어(01)	자기주도학습	AP일반생물학(06) / 지구환경과학 I (07)
					수학 I 실 (생물1, 2, 3반 20명) 수학III실 (미선택 13명) 수학 II 실 (지구4반 13명)
	2	10 : 10 (예비령) 10 : 15 (준비령) 10 : 20 ~ 11 : 10 (1, 2학년) 10:20~11:30(70분) (3학년)	지구과학 II (07)	고급 지구과학(07)	AP일반물리 I (04)
					수학 I 실 (물리1, 2반 19명) 수학III실 (미선택 14명) 수학 II 실 (물리4반 13명)
	3	11 : 40 (예비령) 11 : 45 (준비령) 11 : 50 ~ 12 : 40 (1, 2학년) 11:50~13:00(70분) (3학년)	물리학 II (04)	고급 물리학(04)	AP일반화학 I (05)
					수학 I 실 (화학1, 2반 16명) 수학III실 (미선택 19명) 수학 II 실 (화학3반 11명)

◆ 정기고사 안내 자료(학생용) ◆

1. 학생들은 바른 인성과 정직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공부하고 정정당당하게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으로 시험에 응시한다.
2. **시험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 부정행위 학생은 우리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2조 (평가의 목표 및 방침) >

⑭ 부정행위 학생은 교내봉사활동, 해당 과목 0점 처리 등 본교 학칙과 선도 및 징계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 되,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또한,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치한다.

○ 부정행위 유형

1.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학생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행위
4.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5. 다른 학생에게 답안지를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다른 수험생을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감독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7. 감독 교사의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8. **휴대전화, MP3, PMP,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계산기 등을 교사 당일 시험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9. 기타 시험 감독 교사가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위의 항에 포함되지 않은 부정행위 관련 사항은 우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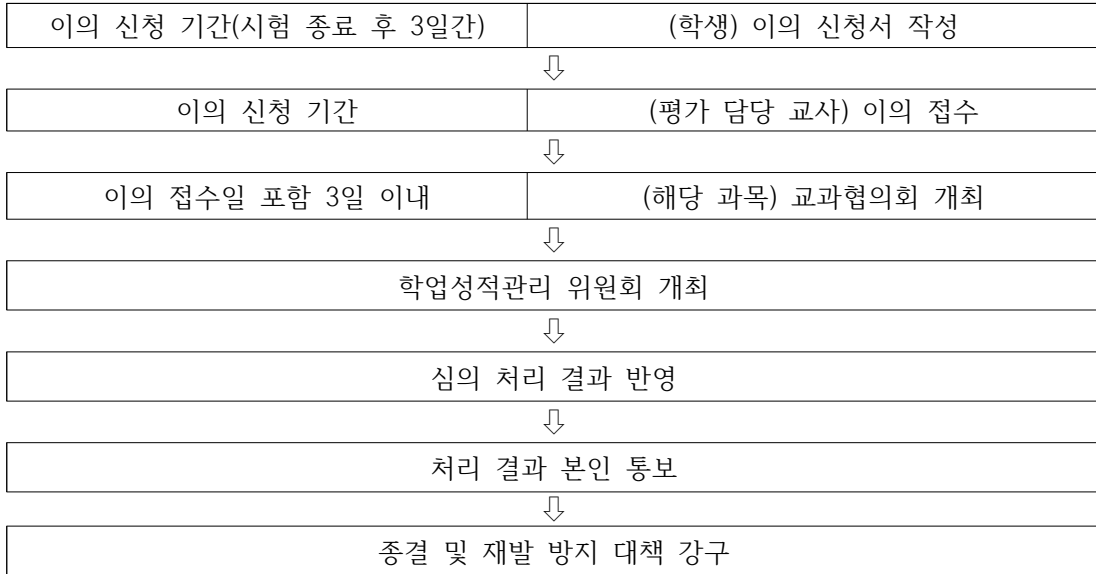
3. 시험 기간 중 휴대전화, MP3, PMP,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계산기, 전자기기 등은 학교에 가져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가져왔을 경우 시험 시작 이전(조회 시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못한 경우 시험 시작 전에 반드시 감독 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 위와 같은 물품을 소지할 경우는 우리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부정행위로 처리한다.(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고, 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실 휴대가 가능함.) 다만, 당뇨병 학생은 관련 조례에 따라 시험 등 평가 시 혈당 확인 및 인슐린 주입을 위한 당뇨병 학생의 전자기기 사용 허용하며, 해당 학생은 진단서 등을 교사 전에 제출하여 이를 확인함.
4. 시험이 시작되기 전 감독 교사의 지시에 따라 책상 속과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을 가방에 담아 교실 앞이나 뒤쪽에 보관한다.
5. 예비령이 울리면 배부된 답안지(OMR 카드 및 서술형 답안지)에 계열, 반, 번호, 이름, 과목명, 과목 코드 등을 표기한다. 준비령이 울리면 배부된 시험지 교과목과 문항지 면수, 문제지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확인이 완료되면 감독 교사의 지시에 따라 본령이 울리기 전까지 눈을 감고 대기한다. 정해진 시험시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종료령이 울리면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감독 교사의 지시에 따라 답안지를 제출한다.
6. 시험이 종료되면 답안지와 시험지를 분리한 후 제출할 답안지 수량이 맞는지 확인하고 답안지를 감독 교사에게 모두 제출한다.
7. 답안지 교체는 시험 종료 5분 전까지 허용되며, 종료령이 울리면 답안을 작성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8. 답안지 작성 시 유의 사항 안내
 - 가. 과목명, 과목 코드, 반, 번호, 이름을 정확히 기재할 것.
 - 나. 선택형
 -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할 것.
 -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하며, 수정테이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학생에게 있음.
 - 다. 서답형
 - 흑색(청색) 볼펜 및 연필(샤프) 사용할 것.
 - 수정테이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학생에게 있으므로 수정테이프 사용을 자제할 것.
 - 정정 시 반드시 두 줄 긋고 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기고사 관련 학업성적관리규정 안내(주요 내용) ◆

-세부 내용은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을 확인(학교 알리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평가의 목표 및 방침)

- ⑪ 학교장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이의 신청에 대한 세부 절차(이의 접수, 심의 처리, 결과 반영, 통보 등)를 마련하고,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문항의 이의 신청에 따른 오류 검증을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⑬ 부정행위 학생은 교내봉사활동, 해당 과목 0점 처리 등 본교 학칙과 선도 및 징계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며,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또한, 부정행위 적발 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제22조 (인정점 부여)

- ① 교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라 처리하며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결시생 인정점 부여를 위한 기준 점수는 해당 학기 내 동일 과목의 성적이 있는 경우 그 성적을 기준 점수로 해당 과목의 '평균점수 비율(전입생제외)'을 적용하여 인정점을 산출한다.

평균점수 비율을 적용한 인정점(인천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text{응시(기준)고사 점수} \times \frac{\text{결시고사 평균}}{\text{응시(기준)고사 평균}} \times \text{결시 사유별 인정 비율}$$

※ 인정점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 인정점 부여 시 사용하는 평균은 해당 지필고사(중간고사, 기말고사, 1회고사, 2회고사 등)에 응시한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응시 학생의 학적 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 ③ 해당 학기에서 시행한 지필평가를 모두 결시(모두 미인정 결시 제외)한 학생의 교과(과목) 성적 처리는 수행평가로 취득한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필평가의 성적 반영 비율과 결시 사유에 따른 반영 비율에 의해 산정하여 인정점을 부여한다. 단, 기본점수 부여 정도를 감안하여 결시생이 응시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하고, 수행평가 취득점이 수행평가 기본 점수보다 작은 경우는 수행평가 취득점 대신 수행평가 최하점을 활용하여 산출한다.

1. 인정점 산출(단, 결시 사유에 따른 반영 비율은 인정 결석 및 상고 결석의 경우 1.0, 병결의 경우 0.8로 하며, 인정점 산출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한다.)

$$\text{인정점} = \left(\frac{\text{수행평가 취득점} - \text{수행평가 기본점}}{\text{수행평가 배점} - \text{수행평가 기본점}} \right) \times \left(\frac{\text{학기말 지필평가}}{\text{배점}} \right) \times \left(\frac{\text{결시사유에 따른 반영 비율}}{\text{반영 비율}} \right) \times \left(\frac{\text{지필평가 최고점}}{\text{지필평가 만점}} \right)$$

- ④ 해당 학기 내 동일 과목의 성적이 없어 기준 점수가 없을 경우, 학교 자체 인정점 산출 기준을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인정점은 해당 과목 최고점을 넘지 못한다.

⑥ 결시생에 대한 인정점은 다음과 같이 성적을 산출한다.

구분(인정 비율)	인정 사유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시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시(징병신체검사, 증인 출두)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출결상황 관리에서 명시한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조치로 인한 결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의 결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임시보호기간 등)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임시보호 기간 중 결시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시한 경우
8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결시(결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 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결시 ○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시(증빙 자료 첨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결시한 경우(학생 인권 보호에 유의) ○ 부정행위자 및 부정행위 협조자의 점수 부여 ○ 학업중단 숙려기간과 지필평가 기간이 중복되어 지필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학교장이 인정한 결시의 경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제2호에 의한 보호관찰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결시 ○ 시·도 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학생이 재적교 평가(지필·수행평가 포함)에 미응시한 경우(단,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6호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에 위탁된 학생이 재적교 평가(지필·수행평가)에 미응시한 경우 미인정 결시) ○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법원소년부의 조사·심리 기간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로 인한 결시 ○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등의 수강, 대안교육으로 인한 결시 ○ 상급학교 진학 시험, 특성화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포함) 학생의 입사 시험의 경우 해당일에 한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 ○ 미인정 결시 ○ 징계로 인한 결시 ○ 그 밖에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결시 사유별 인정 비율 ○ 해당 학년 학생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부여하는 경우는 최하점에서 1점 감점

2024. 4. 9.

인천진산과학교등학교장